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 특례를 중견기업으로 확대〉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09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철수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23.
3. 회부연월일 : 2026. 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 혜택의 축소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보호, 핵심기술 진단 및 보호, 이공계인력 채용 및 부설연구소 지원, 환경시설 정기점검 비용 경감 등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특례를 일부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9부터 제17조의11까지 신설 등).

주요내용

-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의 수탁기업 보유 기술자료 부당 유용 금지, 납품대금 지급 지연시 위탁기업의 이자 지급 의무, 위탁기업의 현금성 결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함(안 제13조)
- 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침해 행위를 당한 기업의 신고 및 정부 조사,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내용 공표, 당사자 의견 청취 등 제도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함(안 제17조의2).
- 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이공계 석·박사, 기술사 채용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함(안 제17조의9 신설).
- 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다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기업의 정기 점검 비용 지원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함(안 제17조의10 신설).
- 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또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함(안 제17조의11 신설).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기존 중소기업 단계에서 제공되던 지원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의 초기 안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기업생태계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중간축(허리)의 역할을 하고 있음¹⁾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산업통상부의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2025.12.30.)’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견기업은 6,474개사로 전체기업의 1.5% 수준이나 총고용은 175.7만명, 총매출은 1,030.5조원, 총수출은 1,227억 달러, R&D투자는 13조원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기존 중소기업 시절에 받던 세제·재정 지원 등 각종 지원은 줄어들거나 없어지면서 성장 유인이 악화되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거나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중소기업 회귀 검토 중견기업 비중>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비중 (%)	6.6	6.2	5.3	6.1	3.5

(조사 대상) 전체 중견기업 중 1,800개사

(회귀 검토요인) 조세혜택 70.6%, 금융지원 18.9%, 중소기업 적합업종 7.8% 공공조달 지원 6.5%

자료: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실태조사, 산업통상부

최근 5년간 변동 기업 수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소→중견(성장)	394	467	163	301	328
중견→중소(회귀)	274	356	217	574	427
중견→대기업	107	205	90	105	103
대기업→중견	24	8	11	21	101

이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에 진력하고 중견기업 진입 초기에 겪는 규제 및 비용 증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중소기업의 특례를 일부 유지하도록 하여 중견기업으로의 자발적 성장 유인을 높여서 원활한 성장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유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²⁾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원 단절을 완화하고 환경 규제 이행 및 탄소중립 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다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 지원의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안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성장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인으로서의 지원이 중요할 것임.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에서 지원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설정³⁾하고, 특히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은 지원대상 선정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별도로 선별하고 정부지원비율을

2) 정부는 2024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의 유예기간을 연장(3년→5년, 상장기업은 2년 추가 유예)하는 등 지원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3) 산업통상부의 설명에 따르면, 2024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의는 완료되었고,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임.

* 2024년 기준으로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5,645개(전체 중견기업의 87.2%)

차등 적용하며, 초기 중견기업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령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기한을 설정⁴⁾하는 등 중견기업이 영구적·장기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일정 매출액 구간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견기업을 말한다.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2. 조문별 검토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단계에서 제 공되던 수위탁거래 공정화, 이공계인력 지원,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 비용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등 지원 등의 특례를 일부 중견기업 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수·위탁거래 시 수탁 중견기업 보호(안 제13조)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	제13조(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 ----- ----- ----- -----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

안 제13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3항, 제27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을 추가 적용하려는 것임⁵⁾.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6.6.3. 시행)

현행 제13조는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기한, 물품검사, 금지행위 및 의무이행 조사·개선요구 등 수·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기본 조항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⁶⁾에 적용하고 있음. 개정안은 여기에 수탁기업 보유 기술자료 부당 유용 금지, 납품대금 부당감액·지연지급 시 이자지급 의무, 시정명령, 명칭·요지 공표, 현금성 결제 확대 지원을 추가하는 것임.

현행법상 적용되고 있는 상생협력법 조항

조 문	내 용
제21조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납품대금 등을 적은 약정서 발급 의무
제22조	납품대금 지급 기한(60일 이내) 및 상생결제 등 지급 방식 준수 의무
제23조	위탁기업의 납품 물품등을 공정, 신속 검사할 의무
제25조제1항	위탁기업의 금지 행위(물품 수령 거부, 대금 부당감액, 임의 취소 또는 변경, 대금 지급 지연, 수령거부 등)
제27조제1항	위탁기업의 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해당기업에 개선요구

추가 적용되는 상생협력법 조항

조 문	내 용
제25조제2항	수탁기업의 기술자료 부당 유용행위 금지
제25조제3항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지연 지급하는 경우 이자 지급 의무
제27조제2항	위탁기업이 상생협력법 규정 위반시 시정에 필요한 조치 명령
제27조제3항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불응시 명칭 및 요지 공표
제27조제6항	대기업의 결제조건 개선 및 현금성 결제 확대를 위한 지원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수탁기업의 지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제조 중견기업의 공급망 내 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6) 시행령 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기술자료 유용 금지 및 납품대금 관련 의무를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수탁 중견기업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27조 제6항의 현금성 결제 확대 지원은 중소기업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 중소기업 지원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집행하고, 초기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기술보호 지원(안 제17조의2)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7조의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 ----- -----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12조----- -----. ----- ----- ----- ----- -----.

안 제17조의2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

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아, 기술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침해행위 중지 등 시정권고 및 공표,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의견청취와 관계 행정기관 협조요청 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임.

현행 제17조의2는 기술보호 진단·자문, 해외진출 기업의 기술보호, 기술보호 관제서비스,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정 중견기업에 적용하고 있으나, 기술침해행위의 신고·조사 및 시정권고 등 사후구제 절차는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

현행법상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조항

조 문	내 용
제12조	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제13조	해외진출 기업의 기술보호 사업 추진
제18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침입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보호 관제서비스 제공
제23조~제28조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설치·운영하고 조정(재판상 화해)·중재(확정판결)

추가 적용되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조항

조 문	내 용
제8조의2	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서류제출 요구 또는 출입 조사)
제8조의3	기술 침해행위 중지 등 시정 권고 및 권고 대상과 내용 공표
제8조의4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 의견 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 협조 요청

개정안은 기술침해 피해가 발생한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유사하게 행

정적 신고·조사 및 시정권고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산업통상부는 기술침해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료제출 요구 또는 출입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의 제재수단도 함께 적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⁷⁾의 과태료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현행 제17조의2 단서가 기술분쟁조정·중재 관련 조항의 적용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및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신고·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가 대기기업의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사후구제라는 성격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 추가되는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및 제35조 역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⁸⁾,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과태료) ①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8)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35조의 과태료 조항을 추가하고 기술분쟁에 적용되는 사후구제 성격의 조항인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및 제35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기술 분쟁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다. 이공계인력 채용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안 제17조의9)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9(이공계인력 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안 제17조의9는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6조⁹⁾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아, 미취업 상태의 이공계 석·박사 또는 기술사 채용 지원과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대기업에 비해 연구인력 확보와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구인력 지원이 단절될 경우 혁신역량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¹⁰⁾

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6조(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 석사학위·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0)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 (대기업) 696, (중견) 1,837 (중소) 36,953 ('25.1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따라서 이공계 인력 채용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중견기업의 R&D 집약도와 혁신역량을 높이고 성장단계 간 지원 단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와 지원 우선순위 등은 시행령 및 사업지침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라.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비용 지원(안 제17조의10)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10(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 비용 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안 제17조의10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2항11)에 따른 중소기업

-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으로 보아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은 일정 업종에서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와 시설관리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의 정기점검 비용 지원 규정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환경규제 이행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은 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 저감과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인 동시에 기업에게는 반복적인 준수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에 해당하므로,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비용 부담을 완화되면 기업 성장에 따른 규제 이행 부담을 완화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환경 관련 정기점검 비용이 비교적 큰 액수가 아닐 것으로 예상되고¹²⁾,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일부에 한정¹³⁾되는 점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12)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제2조(비용 산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계산식
정기점검 비용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보정계수(0.65)

② 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는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

실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대상 업종, 기업 규모, 점검비용 단가, 예산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 온실가스 감축설비 등 지원(안 제17조의11)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11(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안 제17조의11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14)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아,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또는 관련

구 분	내 용
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환경부문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에 업무단계별·시설별 총공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직접경비	직접인건비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경비	직접인건비에 1.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술료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계에서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제2항에서 총공량은 정기점검을 신청한 사업장에 속한 배출시설별 공량의 합계 값으로 하며, 업종별 배출시설별 세부 공량 산정 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 13)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총 180개사(비수도권 106개) 정도로, 2024년 기준 전체 중견기업 6,474개사의 2.8%에 해당함.
- 1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과 제33조에 따

기술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지원 시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감축설비 투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에 속한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탄소중립 전환과 기업 성장지원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등 지원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1,200억원 규모이고, 최근 3년간 지원 대상 중견기업 수는 2022년 70개, 2023년 98개, 2024년 88개로 파악되는데,

현행법 하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개정이 중견기업 피터팬 증후군 문제의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 효용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른 과징금, 제39조에 따른 수수료 및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 세부사업명, 회계 및 사업코드

- 세부사업명 :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환경부) -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 온실가스 감축 통합지원 -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 회계/사업코드 : 기후대응기금/6131-601

□ 사업 내용(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사항 등)

- 지원대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톤 이상인 사업장 보유업체
- 지원기준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공공기관 50%, 대기업 30%
- 지원사항 : 탄소무배출설비, 폐열회수이용설비·탄소포집설비, 전력사용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교체 비용 지원(2015년~)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금액

- 2025년도 예산 : 117,900백만원
- 2026년도 예산안 : 120,000백만원

□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원 대상 기업 수

(단위: 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중소	중견	대	중소	중견	대	중소	중견	대
기업수	27	70	-	27	98	4	18	88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효과는 단순히 지원대상 편입이 아니라 우선 지원 여부와 지원 조건의 차등 적용에서 나타날 것이므로, 사업지침에서 기존 중소기업 우선 지원 원칙과 중견기업 지원이 충돌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458

참고

중소 → 중견 달라지는 주요 제도

구 분		내용																			
단 절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 취업 시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90%) 감면																			
	최저한세 적용 배제	중소기업 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u>최저한세 적용 제외</u>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	▪ 우수조달물품 수의계약 대상을 중소기업 으로 한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을 중소기업 으로 한정 * 신성장 산업분야의 경우 2년간('25~'26년) 중견기업 참여 허용																			
축 소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 중견기업은 매출 3천억 미만 한정	<table><tr><th>구 분</th><th>중企</th><th>中堅</th><th>大</th></tr><tr><td>일반</td><td>10%</td><td>진입1~3년차 7.5%, 진입 4년차 이상 5%</td><td>1%</td></tr><tr><td>신성장 원천기술</td><td>12%</td><td>진입1~3년차 9%, 진입 4년차 이상 6%</td><td>3%</td></tr><tr><td>국가전략기술</td><td>25%</td><td>진입1~3년차 20%, 진입 4년차 이상 15%</td><td>15%</td></tr></table>	구 분	중企	中堅	大	일반	10%	진입1~3년차 7.5%, 진입 4년차 이상 5%	1%	신성장 원천기술	12%	진입1~3년차 9%, 진입 4년차 이상 6%	3%	국가전략기술	25%	진입1~3년차 20%, 진입 4년차 이상 15%	15%			
	구 분	중企	中堅	大																	
	일반	10%	진입1~3년차 7.5%, 진입 4년차 이상 5%	1%																	
	신성장 원천기술	12%	진입1~3년차 9%, 진입 4년차 이상 6%	3%																	
	국가전략기술	25%	진입1~3년차 20%, 진입 4년차 이상 15%	1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중견기업은 매출 5천억 미만 한정	<table><tr><th>구 분</th><th>중企</th><th>中堅</th><th>大</th></tr><tr><td>일반</td><td>25%</td><td>진입1~3년차 20%, 진입4~5년차 15%, 진입6년차 8%</td><td>최대 2%</td></tr><tr><td>신성장 원천기술</td><td>30%</td><td>진입1~3년차 25%, 진입 4년차 이상 20%</td><td>20%</td></tr><tr><td>국가전략기술</td><td>40%</td><td>진입1~3년차 35%, 진입 4년차 이상 30%</td><td>30%</td></tr></table>	구 분	중企	中堅	大	일반	25%	진입1~3년차 20%, 진입4~5년차 15%, 진입6년차 8%	최대 2%	신성장 원천기술	30%	진입1~3년차 25%, 진입 4년차 이상 20%	20%	국가전략기술	40%	진입1~3년차 35%, 진입 4년차 이상 30%	30%			
구 분	중企	中堅	大																		
일반	25%	진입1~3년차 20%, 진입4~5년차 15%, 진입6년차 8%	최대 2%																		
신성장 원천기술	30%	진입1~3년차 25%, 진입 4년차 이상 20%	20%																		
국가전략기술	40%	진입1~3년차 35%, 진입 4년차 이상 30%	30%																		
신용보증기금	▪ 우선보증 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																				
기업승계지원	▪ 공제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규 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생계형 적합업종	▪ 중소기업 적합업종 : 동반성장위가 업종 공표, 대기업의 확장 및 진입자제 권고 ▪ 생계형 적합업종 : 중기부가 업종 고시, 대기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금지(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중기간 경쟁제품	▪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시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																			
	공장설립제한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시 중소기업보다 엄격히 규제																			
	일반 외국인 고용허가 (E-9)	▪ (제조업) 외국인 고용허가 기준*을 초과해도 중소기업과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은 외국인 고용 가능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